수원시 고시 제2015- 277호

개별공시지가 결정 · 공시
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(개별공시지가의 결정·공시 등)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5. 10. 30

수 원 시 장 

1. 2015. 7.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

가. 기 준 일 : 2015. 7. 1.

나. 결 정 일 : 2015. 10. 30.

다. 단 위 : ㎡/원

라. 결정내역 : 2,017필지

- 장안구 : 327필지
- 권선구 : 1,020필지
- 팔달구 : 102필지
- 영통구 : 568필지

2. 결정사항 열람 :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종합민원과

3. 행정사항

-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15. 10. 30~11. 30(30일간)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(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)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 소재지 관할구청 종합민원과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